

#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3256
----------	------

제출연월일 : 2026. 3. .  
제출자 : 하남시장

## 1. 위탁사무명 :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 2. 추진 근거

- 「동물보호법」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감독 등)

## 3. 추진 필요성

- 기존 위탁기관 지정해지(2024. 6. 7.) 이후 시 직영으로 임시 운영 중
-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보호 업무는 상시 대응과 수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직영 운영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음
-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 인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보호동물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양 활성화 등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4. 위탁사무 내용

-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 보호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진료·치료 및 예방적 관리
- 보호동물 공고, 소유자 반환 및 입양 업무 전반
- 보호기간 경과 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리
- 동물보호센터 시설 운영·관리 전반  
(사육·급수·청소·소독·방역·위생 관리 및 개체 관리 등)

## 5.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40번길 75-91
- 시설규모 : 총 15실 / 연면적 352.6㎡  
(사육실 6, 계류실 1, 격리실 2, 사무실 1, 복도, 화장실, 사료보관실, 반려동물 세척장, 샤워실 / 보호 가능 38두)

## 6. 위탁기간

- 2026. 8. 1. ~ 2029. 7. 31.(3년)

## 7.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접수 후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 8. 소요예산

- 총사업비 : 116,884천원(도비 4,950천원, 시비 111,934천원)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제외한 위탁 운영비 기준
- 집행방식 : 유실·유기동물 1두당 구조·보호단가(230천원/두) 기준 지급

## 9.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는 상시 대응과 수의학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시 직영 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수행에 한계가 있음
-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호두수 및 입양 실적 등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관리
- 지도·점검 및 성과 평가 등 관리·감독 체계를 통해 위탁사무의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10. 향후 계획

- 2026. 6.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심사
- 2026. 7. 수탁기관 선정
- 2026. 8.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위탁 운영 개시

## 관련 법령 및 조례

### 1 동물보호법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sup>1</sup>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sup>1</sup>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2.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분양
5.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7.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8.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또는 시·군·구에 운영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

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6. 제86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한 경우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는 제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감독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재지정할 수 있으며, 유실·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지정할 경우 법 제35조제1항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법 제87조 및 영 제26조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⑦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시행규칙 제16조의 시설 인력 기준과 제20조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⑨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⑩ 시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하여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보호하여야 하며, 그 지정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